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1 선고 2020가합52645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9. 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1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,790,575원 및 그중 447,831,073원에 대하여 2019. 1. 16.부터 2019. 3. 31.까지 연 10%, 2019. 4. 1.부터 2020. 5. 19.까지 연 8%, 2020. 5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

1)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과,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 회사에 ① 2015. 7. 1. 보증원금 243,000,000원, 보증기한 2016. 6. 24., 대출과목 '〈기운〉일반자금대출(일시상환)', 대출은행 'C은행 포남동지점'으로 된 신용보증서, ② 2016. 7. 7. 보증원금 229,500,000원, 보증기한 2017. 7. 5., 대출과목 '〈기운〉종합통장대출(일반)', 대출은행 'C은행 포남동지점'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다.

2) 이후 위 ①항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이 218,700,000원으로 변경되었고, 보증기한이 2019. 6. 21.까지로 연장되었으며, 위 ②항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이 2019. 7. 5.까지로 연장되었다.

3)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,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각 신용보증서에 기초해 해당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관하여 상환지체 등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,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,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포함한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한다(위 약정 제10조 제1항).

4)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의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및 기타 비용의 발생

1) 피고 회사는 위 가.항 기재 각 보증일 무렵 위 가.항 기재 각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주식회사

C(이하 'C은행'이라고만 한다)으로부터 각 270,000,000원씩을 대출받았다.

2) 이후 피고 회사는 2018. 12. 13.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위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9. 1. 16.

C은행에 451,344,113원을 변제하였고,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3,513,040원을 회수하였다.

3)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총 1,958,540원을 지출하였다.

다. 지연손해금율

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들에 관하여 그

지연손해금율을 2016. 2. 1.부터 2019. 3. 31.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연 8%로 각 정하고 있다.

【인정 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9. 1. 16. C은행에

451,344,113원을 변제하였고,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3,513,040원을 회수한 사실,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으로 총

1,958,540원을 지출하였고, 위 각 약정에 따르면 위 비용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

되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. 따라서 피고 회사, B은

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구체적인 구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,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비용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

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금은 449,789,613원(= 대위변제금 451,344,113원 - 회수액

3,513,040원 + 보전비용 1,958,540원)임이 계산상 명백하다. 그리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

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

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, 원고가 지연손해금율을 위 대위변제일인 2019. 1. 16.부터 2019. 3. 31.까지 연 10%, 그 다음 날부터 연 8%로 각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, 위 대위변제 당일 회수된 3,513,040원에 대하여는 1일치의 지연손해금 962원($= 3,513,040\text{원} \times 10\% \times 1/365$, 원 미만 버림)이 발생하였고, 비용을 제외한 미회수 대위변제금 447,831,073원($= 451,344,113\text{원} - 3,513,040\text{원}$)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9. 1. 16.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.

다. 따라서 피고 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,790,575원(= 비용 포함 잔존 구상금채권 원금 449,789,613원 +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962원) 및 그중 비용을 제외한 미회수 대위변제금 447,831,073원에 대하여 2019. 1. 16.부터 2019. 3. 31.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%, 그 다음 날인 2019. 4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. 5. 19.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%, 그 다음 날인 2020. 5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윤도근, 판사 이승연, 판사 김동호